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7359호,2005.1.27개정,공포)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절기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식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제설·제빙작업의 지도(안 제4조)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발췌 별첨)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사전협의(승인)사항 : 건축관리부서와 협의함
다. 기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과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지도) 건축물 및 도로 관리부서의 장은 건축물 및 도로의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작업을 실시케 하고 작업상황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는 붙임 예시도 참조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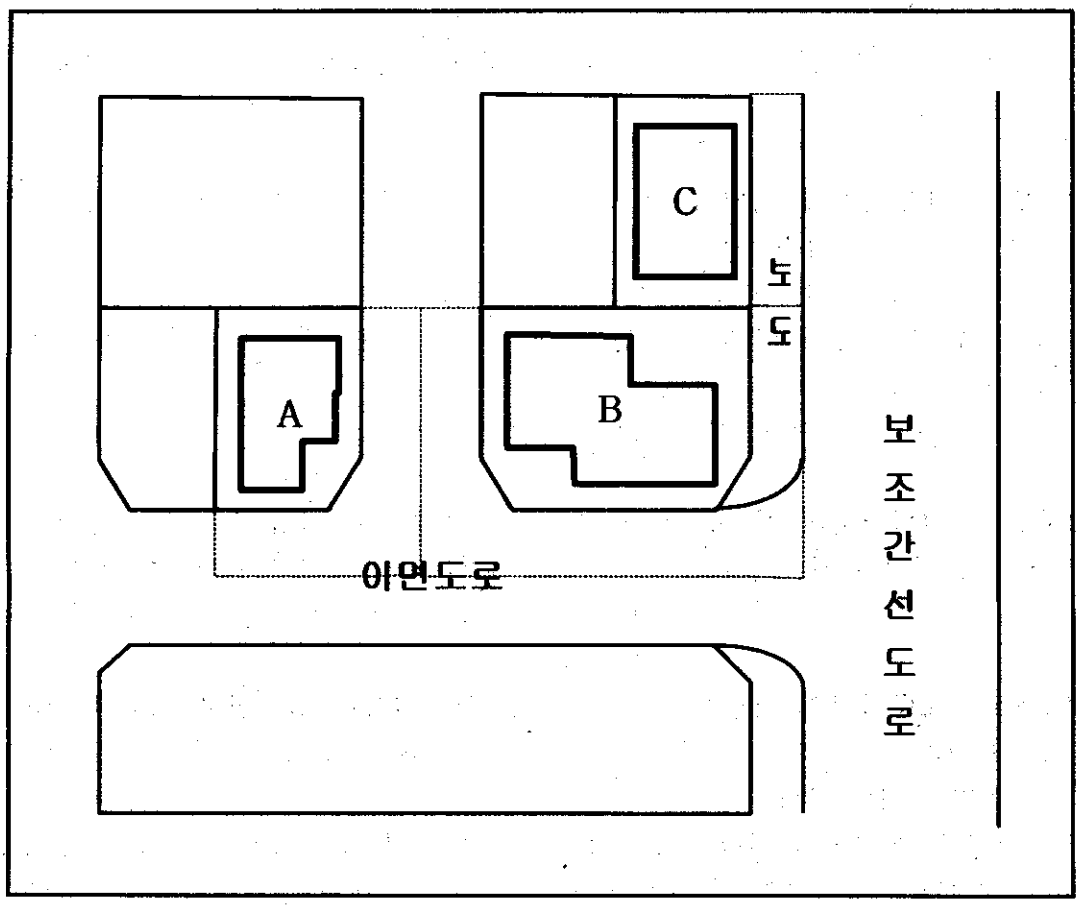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